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66호 2020. 12. 23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○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416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23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16호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”으로,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되,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군수·주민복지실장·보건소장·실무협의체”를 “군수·주민복지실장·보건소장·실무협의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하되,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위촉한다.”를 “위촉하되,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”로 한다.

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

장으로 선출하되,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
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5조 중 “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”을 “국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하고,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협의체 위원장 변경 (제3조)

-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됨

나.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 추가 (제15조)

- 국유·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